의 안 번 호

1633

【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5. 29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: 2020. 5. 29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: 2020. 6. 9.(화)

2. 제안이유

「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"다자녀가 정"정의를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 비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 가정 용어 정의 변경(안 제2조)

- 1) 현행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"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"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 이를 "미성년자인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·보호·교육하는가정"으로 변경하여 정의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3조, 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「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

※ 「울산광역시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」에 따른 일제 정비 협조 (시 복지인구정책과-4137(2020.2.14.)호)

5. 검토의견
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"다자녀 가정"정의를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심각한 저출산 여건 속에서 다자녀 가정 대상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근 거 법 규

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다자녀가정"이란 울산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를 양육·보호·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